

구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2.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산림보호법 개정 시행(2012. 08.23)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구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구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기능(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나. 위원회의 개최방법 및 위원의 임무(안 제3조 및 안제4조)
- 다. 회의 진행방법 및 의견청취, 회의록 작성(안 제5조 ~ 안 제7조)
- 라. 현지조사와 서면심의, 간사의 임무(안 제8조 ~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조례안 붙임

구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구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土石流)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 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인 구미시장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10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은 관련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⑤ 심의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대상지의 위험 등급의 구분은 취약지역의 유형별로 별표 1 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해당 위원은 재 위촉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견 청취) ① 위원장은 안전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가 해당 안전에 대한 진술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6조(상정안전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안건의 의결시에는 위원장 및 위원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에 각각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별지 제3호서식)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현지조사) 위원장이 안전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등)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구미시 산림재해업무를 총괄하는 산림경영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계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심 의 번 호	제 201 - ○ 호	의 결 사 항
심 의 년 월 일	2012. ○ ○. ○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구미시 ○○(동·면) ○○리 ○○번지)

제 출 자	구 미 시 장
제 출 년 월 일	201 . ○ ○. ○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자료

1. 대상지 개요

- ☐ 소재지 : 구미시 ○○(동·면) ○○리 ○○번지(지목 :)
- ☐ 지정면적 : m²
- ☐ 피해유형 :
- ☐ 위험등급 :
- ☐ 피해우려 내용 :

2. 의결 주문

3. 검토 내용(예시)

-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

-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

-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 기타 사항

4. 실무 검토의견(종합의견)

0

5. 참고사항 :

붙임 : 1. 취약지역 판정표

(1-1 산사태 또는 1-2 토석류) 1부.

2. 취약지역 위치도 및 사진 1부.

3. 지역주민의 의견, 홍보 및 교육 관련 내용 1부.

4. 예방공법 전문가 자문 내용(필요시) 1부.

붙임 1-1

산사태 취약지역 판정표							
일 반 정 보	조 사 자	소 속		직		연락처	
				성명			
	조사일자		2012년 월 일				
	위 치	행정구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GPS좌표	위도(° ' ") , 경도(° ' ")				
	○유역면적		ha				
인 자	항목별 점수						
	1	2	3	4	5	점수	
보호대상	일반산지	재산피해	인가1~5미만	인가5이상 ~10미만	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		
점 수	0	100	200	220	240		
경사길이 (m)	50이하	51-100	101-200	201이상			
	0	19	36	74			
모 압	퇴적암 (이암, 혈암, 석암 사암 등)	화성암 (화강암류 기타)	변성암 (천매암, 점판암 기타)	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	화성암 (반암류와 안산암류)		
점 수	0	5	12	19	56		
경사위치	0-4/10	5-6/10	7-10/10				
점 수	0	9	26				
임 상	· 침엽수림 (치수림, 소경목) · 무입목지	· 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 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	· 활엽수림, 혼효림 (소 중 대경목)				
점 수	18	26	0				
사면형	상승사면	평형사면	하강사면	복합사면			
	0	5	12	23			
토심(cm)	20이하	20-100	101이상				
점 수	0	7	21				
경사도(°)	25이하	26-40	41이상				
점 수	16	9	0				
조사자의 점수보정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점수계	점						
종합의견							
관리방안	산지사방()ha						

붙임 1-2

토석류 취약지역 판정표							
일 반 정 보	조 사 자	소 속		직		연락처	
				성명			
	조사일자		2012년 월 일				
	위 치	행정구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GPS좌표	위도(° ' "), 경도(° ' ")				
○유역면적		ha					
인 자	항목별 점수						
	1	2	3	4	5	점 수	
보호대상	일반산지	재산피해	인가1~5미만	인가5이상~10미만	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		
점 수	0	150	300	330	360		
황폐 발생원	산사태 위험지 3,4등급만 있는 유역	산사태 위험지 2등급50% 미만인 유역	산사태 위험지 2등급50% 이상인 유역	산사태 위험지 1등급이 있는 유역			
점 수	0	80	96	112			
계류내 전석 분포 비율(%)	10% 미만	10이상~20미만	20이상~30미만	30이상			
점 수	0	10	40	18			
계류 상부 경사(°)	9 미만	9 ~ 13	14 ~ 18	19이상			
점 수	0	10	28	54			
총 계류 길이(m)	200 미만	200이상~500미만	500이상				
점 수	0	28	74				
계류평균 경사(°)	5 미만	5 ~ 7	8 ~ 10	11 ~ 15	16 이상		
점 수	0	16	32	48	60		
조사자의 점수보정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점수계	점						
종합의견							
관리방안	사방댐()개소 계류보전()km						

붙임 2

취약지역 위치도

발생취약지역 사진

의 결 서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심의번호	심의안건	심사결과
제201 -○호	구미시 ○○(동·면) ○○리 ○○번지	
제201 -○호	구미시 ○○(동·면) ○○리 ○○번지	
제201 -○호	구미시 ○○(동·면) ○○리 ○○번지	
제201 -○호	구미시 ○○(동·면) ○○리 ○○번지	
제201 -○호	구미시 ○○(동·면) ○○리 ○○번지	

201 . ○○.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장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심 의 번 호	제 201 - ○ 호	보 고 사 항
심 의 년 월 일	201 . ○ ○ . ○ ○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12년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

제 출 자	구 미 시 장
제 출 년 월 일	201 . ○ ○ . ○ ○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1. 회의 개요

□ 개최일시 : 201 . ○○ . ○○(월) 00:00~00:00

□ 장 소 :

□ 참석인원 : ○명(참석위원 명단 붙임)

□ 심의안건 : ○건

- 제2012-○호 : ○○(시·군·구) ○○(동·면) ○○리 ○○번지
- 제2012-○호 : ○○(시·군·구) ○○(동·면) ○○리 ○○번지
- 제2012-○호 : ○○(시·군·구) ○○(동·면) ○○리 ○○번지
- 제2012-○호 : ○○(시·군·구) ○○(동·면) ○○리 ○○번지
- 제2012-○호 : ○○(시·군·구) ○○(동·면) ○○리 ○○번지

□ 심의 결과

- 원안의결 :
- 심의부결 :
- 심의보류 :

2. 세부 심의결과

□ 안건번호 : 제201 -○호

- 안 건 명 : ○○(시·군·구) ○○(동·면) ○○리 ○○번지
- 심의결과 :

□ 안건번호 : 제201 -○호

- 안 건 명 : ○○(시·군·구) ○○(동·면) ○○리 ○○번지
- 심사결과 :

☐ 안건번호 : 제201 - ○ 호

○ 안 건 명 : ○○(시·군·구) ○○(동·면) ○○리 ○○번지

○ 심사결과 :

☐ 안건번호 : 제201 - ○ 호

○ 안 건 명 : ○○(시·군·구) ○○(동·면) ○○리 ○○번지

○ 심사결과 :

3. 조치결과

○

○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결과

1. 심의 번호 :

2. 심의 대상지

- (1) 소 재 지 :
- (2) 지정 면적 :
- (3) 피해 유형 :
- (4) 위험 등급 :
- (5) 피해 내용 :

3. 심의 결과

심의 항목	심의결과		
	적정	보완	부적정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			
(4)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			
(5)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4. 심의위원 의견

산사태 취약지역 점수별 등급 판정표(제3조 관련)

산사태 취약지역 등급	점수
1 등급(발생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	360점 이상
2 등급(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	240~360점 미만
3 등급(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	80~240점 미만
4 등급(발생가능성이 없는 지역)	80점 미만

토석류 취약지역 점수별 등급 판정표(제3조 관련)

토석류 취약지역 등급	점수
1 등급(발생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	540점 이상
2 등급(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	360~540점 미만
3 등급(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	120~360점 미만
4 등급(발생가능성이 없는 지역)	120점 미만

관련법령

□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22]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른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와 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⑤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이 각각 임명한다. [본조신설 2012.8.22]